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14 발의연월일: 2025. 3. 7.

발 의 자:김한규·진선미·장철민

민병덕 • 강훈식 • 김태년

윤준병 • 백혜련 • 박정현

임미애 • 박희승 • 이용우

이재정 • 양부남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 (보훈병원을 포함)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하위규정에서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,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또한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사항 중 일부 용어 및 문구를 「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2조 등과 통일하고, 진료비용 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(안 제7조).

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(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["로, "보훈병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를 "보훈병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]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제7조제2항 전단 중 "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설치·운영하는"을 "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 3항 중 "따른"을 "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의 범위"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아 제7조(의료지원) ① 참전유공자 제7조(의료지원) ① ----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-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설치 • 운영하는 의료기관(「한 |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[-----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. ---- 보훈병원(이하 "보훈병 이하 같다)에서 진료를 받는 경 원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] 또 우 그 진료비용(약제비용을 포 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--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 그 감 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<단서 신설> 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 ② ----- 진료를 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----자치단체가 설치 · 운영하는 의 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 여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 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

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
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③ 제1항과 제2항에 <u>따른</u> 진료
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·절
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
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다.

3	_						<u>u</u>	른	국	가
<u>또</u> 는	=	지	방)	가 え]단	체의	4	의토	呈 フ	관
의	범	위								